

기획경제위원회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추경예산안 개요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	293
나.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294
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295
라.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296
마. 검토내역 및 의견	-----	297

1. 추경 예산안 개요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감	%
합 계	611,536	100.0	616,510	100.0	△ 4,973	△ 0.8
인 건 비	42,195	6.9	43,069	7.0	△ 874	△ 2.0
물 건 비	32,756	5.4	32,691	5.3	64	0.2
이 전 경 비	123,893	20.3	122,084	19.8	1,809	1.5
자 본 지 출	386,260	63.2	393,544	63.8	△ 7,284	△ 1.9
용 자 및 출 자	7,678	1.3	7,678	1.2	0	0.0
보 전 재 원	1,815	0.3	1,815	0.3	0	0.0
내 부 거 래	8,155	1.3	6,463	1.0	1,692	26.2
예비비 및 기타	8,781	1.4	9,163	1.5	△ 381	△ 4.2

- 충청북도 일반회계 199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95년도 기정예산액 6,165억 1천만원의 0.8%에 해당하는 49억7천3백만원이 감액된 6,115억3천6백만원 규모로 편성 되었음.

나.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	기 정 예 산 액	구 성 비 (%)	증 감	%
합 계	591,638	100.0	611,758	100.0	△ 20,120	△ 3.3
인 건 비	42,802	7.2	42,802	7.0	-	-
물 건 비	494,006	83.5	514,126	84.0	△ 20,120	△ 3.9
이 전 경 비	44,580	7.5	44,580	7.3	-	-
자 본 지 출	10,250	1.8	10,250	1.7	-	-
용 자 및 출 자						
보 전 재 원						
내 부 거 래						
예비비 및 기타						

- 공보관실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95년도 기정예산액 6억1천1백7십5만8천원의 3.3%에 해당하는 2천1십2만원이 감액된 5억9천1백6십3만8천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음.

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감		
						%	
합 계	127,256	100.0	121,256	100.0	6,000	4.9	
인 건 비	5,936	4.7	5,936	4.9	-	-	
물 건 비	114,320	89.7	108,320	89.3	6,000	5.5	
이 전 경 비	3,500	2.8	3,500	2.9	-	-	
자 본 지 출	3,500	2.8	3,500	2.9	-	-	
용 자 및 출 자							
보 전 재 원							
내 부 거 래							
예비비 및 기타							

- 감사실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95년도 기정예산액 1억2천1백 2십5만6천원의 4.9%에 해당하는 6백만원이 증액된 1억2천7백2십5만6천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음.

라.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감	%
합 계	42,006,119	100.0	42,834,411	100.0	△ 828,292	△ 1.9
인 건 비	16,114,142	38.4	16,571,142	38.7	△ 457,000	△ 2.8
물 건 비	7,055,584	16.8	7,045,647	16.4	9,937	0.1
이 전 경 비	3,283,738	7.8	3,283,738	7.7	-	0.0
자 본 지 출	5,303,594	12.6	5,303,594	12.4	-	0.0
융 자 및 출 자	0	-	0	-	-	-
보 전 재 원	1,727,963	4.1	1,727,963	4.0	-	0.0
내 부 거 래	0		0		-	-
예비비 및 기타	8,521,098	20.3	8,902,327	20.8	△ 381,229	△ 4.3

- 기획관리실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95년도 기정예산액 428억 3천4백4십1만1천원의 1.9%에 해당하는 8억2천8백2십9만2천원이 감액된 420억6백1십1만9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마. 검토내역 및 의견

'9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재정운용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여지며 이를 실.국별로 살펴보면

첫째, '95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5년도 기정예산액 6억1천1백7십5만8천원의 3.3%에 해당하는 2천만원이 감액된 5억9천1백6십3만8천원 규모로써 이는 도전체 일반회계 총예산액 6,115억3천6백만원에 대하여 0.1%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 규모로

○ 물건비에 있어 (p 21)

당초 예산액 5억1천4백만원의 3.9%에 해당하는 2천만원이 감액되어 4억9천4백만원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당초 월간 새총북을 12회 발간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6월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여건변동으로 5월과 6월, 8월과 9월분을 통합 발간함에 따른 2개월분 2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문구독료 인상분에 있어서는

구독료 단가인상분과 충청매일을 새로이 구독함에 따른 구독료등 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한 데서 기인됨.

둘째, '95년도 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95년도 기정예산액 1억2천1백만원의 4.9%인 6백만원이 증액된 1억2천7백만원의 규모로써 이는 도전체 일반회계 총예산액 6,115억3천6백만원의 0.02%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 물건비에 있어 (p 25)

당초 예산액 1억8백만원의 5.5%에 해당하는 6백만원이 증액된 1억1천4백만원의 규모로 이는 공직기강점검등 감사업무추진여비를 증액 계상한 데서 기인됨.

셋째, '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5년도 기정예산액 428억3천4백만원의 1.9%에 해당하는 8억2천8백만원이 감액된 420억6백만원 규모로 이는 도전체 일반회계 총예산액 6,115억3천6백만원의 7.0%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 | | |
|------------|----------------------|
| · 인건비 | 161억1천4백만원(△ 2.8% 감) |
| · 물건비 | 70억5천5백만원(0.1% 증) |
| · 예비비 및 기타 | 85억2천1백만원(△ 4.3% 감) |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1) 인건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65억7천1백만원의 2.8%에 해당하는 4억5천7백만원이 감액된 161억1천4백만원 규모로 인건비의 소요액 판단결과 과다 책정되었기 이를 감액 처리한 데서 기인되며

2) 둘째, 물건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70억4천5백만원의 0.1%에 해당하는 1천만원이 증액된 70억5천5백만원으로

- 예산 기능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 시도예산운영 (P 33)에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타 실국·과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통계전산운영 (P 34)에

행망용데이터통신 회선사용료 및 정보서비스통신회선료등 공공요금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데서 기인됨.

3)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89억2백만원의 4.3%에 해당하는 3억8천1백만원이 감액된 85억2천1백만원이 감액된 85억2천1백만원 규모로

◦ 반환금 및 기타 (P 35)에

'94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 지방도 수해복구비, 축산물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 지원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1천만원과

◦ 예비비 (p 35)에

세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49여억원 줄어든데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예비비 4억 9천만원을 감액 처리한 데서 기인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년도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 예산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조정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